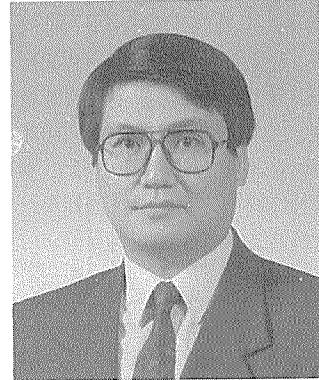


지구환경 규제 강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李善龍

<환경처 지구환경과장·정책학박사>

1. 국제환경협력의 태동

인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활터 전인 지구에서 흔히 생존을 위한 경제 활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소비와 생산활동을 영위해 왔으며, 그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산물로서의 여러 환경오염물질을 지구생태계에 배출시켜 왔다.

본래 자연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정처리능력(*assimilative capacity*)을 통해 대기중에 배출된 부산물로서의 유해성분을 바람이나 기체의 유동성을 통한 확산을 통해 그 농도를 희석시켜 왔으며, 물을 매개(*media*)로 수로에 배출된 유해물질들은 공기나 물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통해 산화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화를 시켜 자연속의 항상성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자연속의 균형과 안정은, 산

업개혁이후 도시화, 인구의 증가, 인구의 도시집중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과학기술이 자연에 미치게 될 환경상이나 건강상의 위해를 예전하거나 그를 제거할 과학기술이 마련되기도 전에 양적 성장에만 집착한 인류의 과욕이 무분별한 생산이나 소비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각 국은 어쩔 수 없는 환경파괴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선진공업국들은 일찌기 이러한 경제 규모의 팽창을 경험하면서도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환경파괴가 종국에는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의 달콤함을 뿐리께 혼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그들이 항상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간과하거나 무시해 왔던 자유재로서의 공기와 물이 가지는 생산과 소비활동에서의 주요한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들

의 이러한 인식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지구생태계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체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인류의 생산과 소비활동에 따라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흔히 개발도상국이라고 일컬어 지는 후진국들은 선진제국의 식민지 경영을 받은 이후, 필연적으로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게 되고 선진국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단순한 기능을 해 온 것이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선진국과의 경제나 산업 발달의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뒤떨어진 경제상황이나 국가발전단계를 조속하게 선진공업국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그들에게 이러한 염원을 달성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나 방안이 한정되어 있다는 상황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환경자원을 마구 남용

(overexploitation)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식민지 경제 시대에는 타의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외화를 얻기 위한 그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유일한 자산을 어쩔 수 없이 헐값에 처분해야 했고, 이러한 행태의 결과로서 환경이 파괴되어 기아와 천재지변, 그리고 사막화에 시달리게 되는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선진공업국들과 후진국들 사이의 갈등, 즉 남북간의 갈등은 1972년 스웨덴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134개국의 정부 대표가 모여 「인간환경 선언」을 채택한 스톡홀름 회의에서도 확연히 나타났다. 선진공업국들은 무분별한 경제 개발정책이 불러오게 될 인류에의 재앙을 강조하면서 인류가 지구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구촌의 공동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서 각국의 협력을 얻고자 하였으나, 후진국들은 이러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환경 문제의 중요성의 강조가 선진국의 발전 과정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신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비난과 함께, 경제 개발을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려고 하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을 좌절시켜 빙부격차를 영구히 하려는 선진국의 음모(*conspiracy*)라고 까지 비난하였다.

이러한 선진국과 후진국의 시각 차에 따르는 갈등은 급기야 스톡홀름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설립되어 지게 된 국제 기구인 국제 환경 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의 본부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갈등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선진국들은 국제 환경 문제의 여타 분야와의 연계성과 상호 관련성을 이유로

UN본부가 위치한 미국의 뉴욕이나 스위스의 제네바에 그 기구의 본부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후진국들은 새로운 환경 기구가 또 다시 선진국의 수중에서 놀아나게 해서는 안된다는名分을 내세워, 결국은 표결권의 수에서 우세한 후진국의 주장대로 아프리카 캐나다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UNEP를 유치하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2. 국제환경협력의 새로운 전개

UNEP를 중심으로 한 국제환경협력은 그 전 담기구의 설치에서부터 후진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며 되어, 캐나다인인 Maurice Strong이 그 초대 사무처장을 지낸 이후 약 17년간을 이집트인인 Mostafa Tolba가 연임되어 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진공업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제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공업국들의 재정 지원과 앞선 환경 청정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UNEP의 기능은 다분히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환경 보호를 위한 구호의 양산에 그치게 되어 벼려 한정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선진국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기구의 활동을 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후진국들도 이 기구를 통한 결의나 활동이 방향없는 메아리에 그친다는 한계를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교착기에서 1983년 UN총회는 더 이상 지구 환경 문제를 이와 같은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당시 노르웨이 환경 장관으로 현재 수상을 맡고 있는 Ms. Gro Harlem Brundtland에게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세계적인 의견과 행동지침을 마련할 것을 위임하였고, 이른바

Brundtland Commission 약 3년 반 동안의 활동을 통해 보고서를 UN총회에 제출하게 되었는 바, 이것이 바로 '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Brundtland Report*인 것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한 핵심은 환경과 개발간의 조화를 내세운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인 바, 이러한 개념의 정립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을 무리 없이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환경의 보호는 우리 인류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원동력이며 모든 개발 행위는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접수한 UN총회는 1972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 선언의 20주년 기념 회의를 이 보고서의 주요 핵심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여 개최키로 정한 바, 이렇게 개최된 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 개발 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인 것이다. 이 회의에는 160여 개국의 대표가 모여 「리우 선언」「의제 21」을 채택하였고 「기후 변화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을 채택, 거의 모든 참가국이 서명을 하는 결실을 맺어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및 활동의 전개는 각 국가의 환경 정책은 물론, 경제, 사회, 산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떠한 선언이나 결의사항보다는 국가 간의 약속을 담은 법적 규범인 국제 환경 협약들이다. 국제적인 환경 협약이라 함은 좁은 의미로는 환경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다자간의 협약(CONV-

ENTION)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나, 흔히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다루는 양자간의 조약(TREATY), 협정(AGREEMENT), 의정서(PROTOCOL)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근래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뿐인 지구(The Only Earth)」를 보전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넓게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규로서의 이러한 환경협약들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되는 집행력의 결여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강력한 경제제제조치들이 선진공업국들을 중심으로 채택되거나 채택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경제구조의 특성상 對外輸出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조치 등을 「강건너 불」보듯 할 수는 없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이 국제환경보호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일본, EC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무역규제조치내용이 상의 규제조치를 통상압력으로 교역 당사국에게 적용시키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종합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3. 국제환경협약 개관

1945년이후 채택되어 기히 발효되었거나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약 15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협약은 1990년 말 현재 대기환경문제에 관한 것이 3개, 해양보전관련 협약이 8개,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의 보호에 관련한 것이 3개, 핵안전관리협약 5개 등, 총 23

개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내용과 가입시기는 아래와 같다.

<대기부문>

-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1985. 3. 22 채택/1988. 9. 22 발효/1992. 5. 27 가입)
 -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과학기술협력
 - 오존층 파괴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의무 등
- (2) 오존층파괴물질규제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1987. 9. 16/1989. 1. 1/1992. 5. 27)
 - 1986년을 기준으로 CFC 등 소비량의 단계적 감축일정규정
 - 협약 미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
- (3)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기타 적대적 사용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 1977. 5. 18/1978. 10. 5/ 1986. 12. 2)
 -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화학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해양부문>

- (4)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1954. 5. 12/1956. 7. 26/1978. 10. 31)

- 선박에서 유출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 (5) 대서양 참치의 보전에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1966. 5. 14/1969. 3. 21/1970. 8. 28)
 - 식용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수준의 참치류를 보존
- (6) 동남 대서양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South-east Atlantic*; 1969. 10. 23/1971. 10. 24/1981. 2. 18)
 - 생물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개발에 따른 협력의 도모
- (7)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11. 29/1975. 6. 9/1979. 3. 18)
 -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고, 책임문제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의 마련
- (8) 선박에 의한 오염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11. 2/1984. 10. 13)
 -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기타 유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의 저감을 통한 해상환경의 보전
- (9)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협약 관련 1978년 의정서 (*Protocol of 1978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8. 2. 17/1983. 10. 2/

1984. 10. 23)

- MARPOL 73/78 Annex I.

(10) U.N.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12. 10/미 발효/1983. 3. 14 서명)

- 해양환경오염에 관한 포괄적인 법체계의 정립

(11) 국제포경규제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1946. 12. 10/1948. 11. 10/1978. 12. 28)

- 모든 종류의 고래를 과도한 남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고래보호단체의 설립 등 포경 행위 관계규율의 제정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

(12)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1951. 12. 6/1952. 4. 3/ 1953. 12. 8)

- 식물 및 농작물의 해충, 질병 예방 그리고 치료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13)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식물 보호협정(*Plant Protection Agreement for the South-east Asia and Pacific Region*; 1956. 2. 27/ 1956. 7. 2/1981. 11. 4)

- 질병과 해충을 지닌 식물의 동남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로의 도입과 확산의 방지

(14) 국제열대목재협정(*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83. 11. 18/1985. 4. 1/ 1985. 6. 25)

-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열대목재림의 최적 이용확보

<핵안전 관리>

(15) 대기, 외기권,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 금지조약(*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1963. 8. 5/ 1963. 10. 10/1981. 7. 24)

-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여타 무기의 생산 및 실험을 제한함.

(16) 핵 및 기타 무기의 해저, 해상, 지하에서의 설치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the Emplacement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in the Subsoil Thereof, London, Moscow*, 1971. 2. 11/ 1972. 5. 18/1987. 6. 25)

- 군비경쟁종식을 위해 해저, 해상, 지하에서의 핵 및 기타 무기의 설치를 금지

(17) 핵물질의 방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1980. 3. 3/ 1987. 2. 8/1987. 2. 8)

- 국제간 핵물질의 이동시, 보호대상 범위설정과 수송방법에 대한 규정

(18) 핵사고의 조기인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1986. 9. 26/1986. 10. 27/1990. 7. 9)

- 국가간 방사선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핵사고에 관련한 정보의 제공

(19) 핵 사고 또는 방사선능 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1986. 9. 26/1987. 2. 26/1990. 7. 9)

- 핵 사고 또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긴급사태시 즉시 지원 제공

<기타>

(20) 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 1959. 12. 1/1961. 6. 23/1986. 1. 28)

- 남극대륙의 평화적 목적 이용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시 분쟁소지 억제

(21) 외계의 이용 및 탐사에 있어 국가 활동원칙에 관한 협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967. 1. 27/1967. 10. 10/1967. 10. 13)

(22) 남극 해양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1980. 5. 20/1982. 4. 7/1985. 4. 28)

- 남극의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자원의 보호

(23) 세계 문화적, 자연 유적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11. 23/1975. 12. 17/1988. 12. 14)

- 문화적·자연적 유적의 효과적인 보호체계의 수립

4. 주요국제환경협약의 우리에의 영향, 그리고 대응방안

위에서 열거한 국제환경협약 이외에

도 우리나라에서 가입과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협약으로서는 1992년 브라질 리우(Rio) 회의서 서명한 「기후 변화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간 교역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그리고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 및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등이 있으며, 오존층의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는 이미 2 차례 걸쳐 의정서 개정안이 채택되어 있어 각 개정안에 대한 가입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1) 기후변화협약

대기중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의 배출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UNEP와 WMO가 1988년 11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를 설립하여 마련한 이 협약은, 1992년 6월 UNCED에서 채택된 이후 이미 157개국이 서명하였고, 미국 등 16개국이 이미 비준서를 기탁한 바 있다.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50개국이 비율을 완료한 이후 90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이와 같은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을 표명한 바 있어, 에너지다소비국인 우리나라로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직면하고 있다.

산유국이나 에너지 다소비국에 대한 특별배려조항과 개발도상국들의 협약이 행지원을 위한 선진국들의 재정지원조항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향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준이 정해지고 관련 부속의정서의 구체적인 규제내용이 정해지면, 그 내용에 따라서는 선발개도국으로서의 경직적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연간 에너지 사용증가율이 14%이상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에너지 중 화석연료의 사용의존도가 높아 온실가스 배출량의 규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정부의 경제활성화정책에 걸림돌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소비절약, 에너지효율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조정·개편하여 정밀기기 산업이나 유전공학관련 산업 등 상대적으로 에너지의존도가 낮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생물다양성 협약

지구상 현존하고 있는 5천만 종의 동·식물 종자중에서 매년 3만 5천내지 5만여 종이 멸종되고 있는 현실에 입각, 지구상의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에 의해 마련되어 1992년 UNCED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은

1992년 11월 현재 159개국이 서명하고 캐나다 등 20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장차 30개국이 가입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되게 되어 있다.

종래 동협약에 대해 제약회사들의 보유하고 있는 지적소유권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미국이 클린턴정부의 출범후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해 금년 6월 중순에 추가적으로 서명을 완료하였고, EC국가들이 별도의 국내조치 필요 없이도 수용할 수 있는 협약이므로 1993년 말까지 발효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별 생물자원에 대한 자주적인 고유권리를 인정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수립, 생물다양성 분포 상황의 조사 및 목록작성·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나라가 보유한 유전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이용국과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며 이와 관련한 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생물체(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협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전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러한 협약이 효력을 발하게 될 경우 각국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보유지역의 보전을 더욱 강화하고, 관리대상이 될 유전자원 등의 국제교류가 엄격히 규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초보단계에 있는 우리의 생명공학산업의 장애요소로 다가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보고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열대림의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전되고 있

어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열 대 산 목재의 최대 수입·가공국인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3) CITES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간 교역의 규제를 위해 1973년 미국 위싱톤에서 채택된 이후, 1993년 5월 현재 119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이 협약에는 최근 우리나라도 가입절차를 완료하였다.

이 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코뿔소뿔의 불법거래국 4개국 중 하나로 지적되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손상은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민간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CITES관련 제품 및 일반수출품목에 대한 불매운동이 불법거래국들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이상 협약가입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이었고, 미국은 6월 초에 코뿔소뿔과 호랑이 뼈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온 중국과 대만에게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수정펠리법(Pelly Amendment)에 의거 한 불법거래국 확인서(certificate)를 발부해 놓고 있어 양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종래 이 협약에의 가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까닭은 CITES협약에서 사향, 응답, 호골, 구판, 천산갑 등의 한약재 및 야생모피 등이 국제거래규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한약업계 등 관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국제여론의 악화, 실질적 무역보복조치 가능성 등 의 이유로 조속한 가입을 서둘러왔고, 한약업계에서 요청한 유보항목 5개 중 사향과 응답만 최장 3년이내로 유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할 것은, 이제는 우리 국민도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구촌 가족으로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이다. 비록 몇몇 품목들의 국제거래가 규제됨에 따라서 불편이 초래되거나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경제적이익이 다른 나라가 이러한 협약의 정신에 따라 포기한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얻던 것이라면 과감히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4) 바젤협약

선진공업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유해성 폐기물이 중남미·아프리카 등의 후진국에 재활용가능한 원자재나 원료로 가장되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이로 인한 유해성 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국제적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제안으로 UNEP에서 마련한 이 협약은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었고 1992년 5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총 47종의 유해폐기물을 지정하여 협약가입국의 유해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적정관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시에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협약의 미가입국가들과의 교역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유해폐기물의 수입이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으므로 이러한 바젤협약의 정신은 우리의 유해폐기물 관리 정체 방향과 같은 궤를 지키고 있고, 유해폐기물의 국제 이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필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어 1992년에 「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은 이미 1992년 5월에 발효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과 일본이 이 협약에 가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5) 몬트리올 의정서

성층권 오존층의 보호를 위해 1985년에 채택된 비엔나협약은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협력방안을 규정한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규제사항을 정한 것이 1987년 캐나다에서 채택된 몬트리올의정서이다. 이 의정서는 구체적인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량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규제대상 물질도 확대되고 있고 규제 일정도 앞당겨지고 있어, 선발개도국으로서 이 의정서상 주요규제대상물질인 CFC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CFC의 사용량 감축과 대체물질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준 협약이라 할 수 있는 바, 우리나라는 1992년 5월에 원의정서에, 1993년 3월에 1차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동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의 대상국가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이 의정서상의 CFC 사용량 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CFC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냉장고·에어콘 제조업체 및 전자·정밀기기 제조업체에 대해서 CFC의 회수, 재사용 장치나 설비를 갖

추도록 하고 이러한 회수·재사용설비를 갖추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을 통해 CFC의 사용한도량의 규제에 따르는 공급부족을 완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며, 대체물질개발 및 이용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어지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활용한 정부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5. 맷는말

이제 국제환경보전문제는 단순히 지구환경을 保全하자는 메아리 없는 공허한 의침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수단

으로서의 무역규제·보복조치가 수반된 우리 경제·산업에의 걸림돌로 가까이 와 닿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사이의 선발개도국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입장을 같이 나눌 동지도 없이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처지인 것이다.

따라서 지구환경의 악화에 대한 선진 공업국의 책임과 의무는 강조해야 하지만, 후발공업국 내지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부담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므로 선진 공업국이 보유하고 있는 청정기술의 이전 및 지구환경개선을 위한 그들의 재

정부담을 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입각하여 주장하는 한편,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정한 수준의 피할 수 없는 의무나 부담은 지구촌 가족의 일원으로서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 향후 국제협약의 논의 전개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적극적인 참여가 UNCED의 후속집행기구로서 발족된 지속개발위원회(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이사국인 우리나라에게 요구되고 있는 걸맞는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수 뜻 물

수량조절 분무형꼭지 달자

한 가정서 10%씩 줄이면 年2백50억원 절감



수량(水量)은 일정하나 물을 사용해야하는 인구

는 계속 늘어 어느 나라고 물사정은 어려운 형편이다. 원수(原水)를 수돗물로 만드는데 드는 에너지 비용은 수돗물 원가의 40%를 차지한다.

서울시의 경우, 수돗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전기료만 1년에 3백억원이 넘는다.

수돗물을 아끼는 것은 곧 돈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량은 1분에 1ℓ가 적당하다. 이를 넘어가면 물이 적당히 나오는 분무형 꼭지를 달자.

월간 20m³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이 10%의 물을 절약하면 연간 24m³, m³당 1백원씩 2천4백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전국의 총 수도사용량 25억t을 10% 줄이면 순수한 물값만 2백50억원이나 절감한다.